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 05. 26 (수)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8. 06. 20(금)
- 다. 상정일자 : 2008. 06. 23(월)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재무과장 신종해)

가. 지난 1월부터 여비정산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국내여비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2008.2. 29 대통령령 제20402호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규정에 준하여 우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 시행키 위함임

나. 주요골자

- 1) 군수의 여비 지급구분에 있어 기준설정(안제3조제1항)
- 2) 운임및숙박비 지급에 따른 새로운 조항신설(안제4조 및 별표)
- 3) 여비정산제도 개선에 따라 당초시행해 오던 신용카드 의무사용조항이 삭제되고 기타조항은 소관부처장의 개정사항이며 금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사후정산제도에서 사전정액제로 개정되는 주요 내용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진)

가.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우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운임 및 숙박비 지급과 관련하여,

- 기존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후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토록 되어 있었으나,
- 변경된 사항을 보면 운임 및 숙박비지급을 등급 및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다. 결과적으로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 우리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난1월부터 여비정산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맞지 않아 국내여비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2008.2. 29 대통령령 제20402호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규정에 준하여 우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 시행키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군수의 여비 지급구분에 있어 기준설정(안제3조제1항)

나.운임및숙박비 지급에 따른 새로운 조항신설(안제4조 및 별표)

다.여비정산제도 개선에 따라 당초시행해 오던 신용카드 의무사용조항이 삭제되고 기타조항은 소관부처장의 개정사항이며 금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사후정산제도에서 사전정액제로 개정되는 주요 내용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생략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평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 동 차 (버스)운임	숙박비(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 액	정 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 액	정 액	30,000

- 비 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